

2023년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,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,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3. 6.

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

■ 모집개요

1. 공고기간 : 2023. 3. 6.(월) ~ 4. 5.(수)
2. 접수기간 : 2023. 3. 29.(수) ~ 4. 5.(수) 16:00
3. 센터위치 : **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**
4. 입주기간 : 2023. 4. 14. ~ 2023. 10. 13.
5. 모집대상 : 7개사(예정)
 - 입주기간 : 6개월 (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가능)
 - ※ 최대 입주 가능 기간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 - 입주 개시 후 1개월 이내 입주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, 차점자 추가 선발
 - ※ 최소기준 (평균 60점이상) 불충족 시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
6. 지원자격

○ 지원자격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
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
 - ※ 3년이상 7년미만 기창업자는 「비상주형」 입주, 비상근 주소지 이전방식이며
그 외 지원사항은 동일함.

○ 지원제한

-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(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)
 - ※ 창업예정자는 입주 후 45일 이내 미 창업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창업 시 입주선정 취소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

7. 의무사항(불이행시 계약 취소)

- 입주 후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(이전) 후,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- 사무공간 활용 : 주2회 이상 사용 (비상주형 제외)
- 분기별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

8. 주요 지원사항

- 공용 사무공간 및 공용 사무기기 제공
-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, 사업화지원 등 경영지원
- 기타 센터 편의시설 이용 등



9. 제출서류 (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증명사진 첨부된 이력서 1부. (필수서류, 자유서식)
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. (필수서류)
- 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 각 1부. (필수서류)
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. (필수서류)
-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. (해당자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. (해당자)
- 주민등록등본 1부. (해당자)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(해당자)
- 가점 및 기타 증빙 각 1부. (해당자)
 - ※ 가산점 항목 및 기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에 인정되지 않음
 - ※ 기타증빙 :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, 교육수료증 등

10.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

- 심사방법 :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
- 1차 심사 :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(창업업종, 주소지 등) 서면심사 후 2차 심사여부 결정
- 2차 심사 : 사업능력,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

평 가 항 목		배 점
창업자역량	- 창업자 전문성, 사업추진의지	20
사업계획의 적정성	-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, 제품(기술)의 차별성	20
기술성	- 제품(기술)의 파급력, 기술구현의 현실성	20
시장성	-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, 시장진출 가능성	15
고용 및 수출잠재성	- 수출가능성, 고용창출가능성	15
기타	- 입주희망사유, 입주 후 활동계획	10
가점	- 최근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-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- 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(전자상거래)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- 재창업기업(폐업사실확인서 제출必, 성실경영평가 통과자(1점)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(3점))	최대3점 (각1점)

※ 2차 면접심사 불참 시 0점 처리

※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이상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입주업체를 선발함

※ 2차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- 선정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1차 심사 → 2차 심사 → 최종 입주자 선정
- 결과통보 : 심의 후 홈페이지(꿈마루) 게시 및 개별 통보
 -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심사 공지 : 꿈마루 홈페이지만 공지
 - 최종 합격 발표 : 꿈마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11. 접수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3. 6.(월) ~ 4. 5.(수) 16:00까지(기한 엄수)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
 - 홈페이지 접수 :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(<https://apply.jobaba.net/>)

※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

- 유의사항
 - 온라인 접수시 입력정보 부정확, 신청서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 -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 -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접수 진행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범죄 경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기업 선정 등 지원사항 일체를 취소함

12. 기타사항

- 모집관련 상세내용 www.dreammaru.or.kr 공지사항
- 문 의 처 : 031-270-9788(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담당)

[참고 1] 1인창조기업 확인 및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① 1인 창조기업 확인

<https://www.k-startup.go.kr/common/knProject/application/ac/coCheckPop.do>

②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제출서류	해당자		
	예비창업자	기창업자 (개인)	기창업자 (법인)
입주신청서	○	○	○
사업계획서	○	○	○
개인정보 동의서	○	○	○
이력서(사진포함)	○	○	○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○	○	○
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	○	○	○
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	○	○	○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대표자와 상시 고용인력 있는 경우만 해당)	×	○	○
대표자 주민등록등본	○	×	×
사업자등록증	×	○	○
법인등기부등본	×	×	○
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	×	○	○
가점증빙 및 이외 증빙	선택 제출		

※ 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, 인증, 교육 수수료증 등 이외 증빙은 해당자 제출서류로 증빙 제출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※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([k-startup 정회원 신청시 승인 이후 본인 출력가능](#))

※ 가점사항

-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1점)
- 만 39세 이하 청년 (예비)1인 창조기업 (1점)
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(1점)
- 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(전자상거래)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(1점)
-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(1점)
- 재기 1인 창조기업(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)
 -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(1점)
 -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(3점)

[참고 2]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범위

□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범위*

* '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' 제3조제1항

-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는 1인 창조기업
-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,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
< 1인 창조기업 정의 및 유예기간 >

- (정의*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**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' 제2조

*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<별표 1>

- (유예기간*)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 (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)

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' 제3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광업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05
	금속광업	06
	비금속광물 광업, 연료용 제외	07
	광업지원서비스업	08
제조업	담배제조업	12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1차 금속 제조업	24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5
	수도사업	36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7
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38
	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건설업	종합건설업	41
	전문직별 공사업	42
도매 및 소매업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45
	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	소매업,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	47
운수업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49
	수상 운송업	50
	항공 운송업	51
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숙박 및 음식점업	숙박업	55
	음식점 및 주점업	56
금융 및 보험업	금융업	64
	보험 및 연금업	65
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66
부동산업 및 임대업	부동산업	68
	임대업, 부동산 제외	69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	86
	사회복지 서비스업	8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